행정안전부



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사고까지 **재난배상 책임보험**으로 대비하세요!

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**화재·폭발·붕괴** 로 인한
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**의무보험**입니다.

가입대상 (19종)

1층 일반·휴게음식점(100㎡ 이상), 숙박업소,
15층 이하 아파트(의무관리대상), 주유소,
물류창고, 장례식장, 여객자동차터미널,
도서관, 과학관, 박물관, 미술관, 경륜장,
경정장, 장외매장, 경마장, 장외발매소,
지하도상가, 국제회의시설, 전시시설



※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
콜센터(02-3702-8500)로 전화주세요.

보상 범위

신체피해 :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
재산피해 : 10억원까지 보상

-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(원인불명 사고, 방화 등)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.
- 자연재난(지진 등)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가입 기한

신규 시설 :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

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,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
[가입 전화] · 메리츠화재 I 1566-7711 · 한화손해보험 I 1566-8000 · 롯데손해보험 I 1588-334 · 흥국화재 I 1688-1688
· 삼성화재 I 1588-5114 · 현대해상 I 1588-5656 · KB손해보험 I 1544-0114 · DB손해보험 I 1588-0100 · 더케이손해보험 I 1566-3000
· NH농협손해보험 I 1644-9000 · 수협 I 1588-4119 · 신협 I 1544-3030 · MG새마을금고 I 1599-9010